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** 발생과 관련하여 **입원 또는 격리된 분**들은 **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**를 받거나, **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

그 밖의 **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**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##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

- □ 신청자격 : <u>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</u>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  - \* 「근로기준법」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  - ※ 근로자 수 산정기준 : 신청일이 속한 달의 '전월 말일'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(동일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)
    - \* 법인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(연금 가입자 수 기준)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
    - \*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
- □ 지원제외 대상 입원·격리자
  -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
  - ②「감염병예방법」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자
  -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
- □ **지원금액** :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 일 최대 45,000원 지원 (최대 5일분까지 지원)
  - <u>단</u>, 일급 45,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(45,000원) 예외 지원
- □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- □ 신청기간 :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\*로부터 90일 이내
  - \* (예) 격리기간이 1.1.~1.7.인 경우, 신청기간은 1.8.부터 90일 이내
- □ 신청서류 :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  -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④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⑤ 통장사본 등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)
- ※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.